

#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개정 안내( 24.1.1일 시행)

## 1 표준교육과정과 교육시간

구분	과목	교육내용	세부내용	교육시간	
				이론	실기
이론강의 (126시간) / 실기연습 (114시간)	요양보호와 인권	요양보호 대상자의 이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노인과 노화 과정</li> <li>● 노년기 특성</li> <li>● 가족관계 변화와 노인 부양</li> <li>● 대상자 중심 요양보호</li> </ul>	2	2
		노인복지와 장기요양제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사회복지와 노인복지</li> <li>●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</li> <li>● 요양보호 업무</li> </ul>	7	
		인권과 직업윤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노인의 인권보호</li> <li>● 노인학대 예방</li> </ul>	6	6
		요양보호사 인권보호와 자기계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요양보호사의 인권 보호</li> <li>●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</li> <li>● 요양보호사의 건강 및 안전 관리</li> </ul>	6	3
	노화와 건강증진	노화에 따른 변 화와 질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노인성 질환의 특성</li> <li>● 노화에 따른 변화와 주요 질환</li> </ul>	18	3
		치매, 뇌졸중 파 킨슨 질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치매</li> <li>● 뇌졸중</li> <li>● 파킨슨 질환</li> </ul>		
		노인의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영양</li> <li>● 운동</li> <li>● 수면</li> <li>● 성생활</li> <li>● 약물사용</li> <li>● 금연과 적정 음주</li> <li>● 예방 접종</li> <li>● 계절별 생활안전 수칙</li> </ul>		
이론강의 (126시간) / 실기연습 (114시간)	요양보호와 생활지원	의사소통과 정서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정서지원</li> <li>● 상황별 의사소통의 실제</li> <li>● 여가활동 돕기</li> </ul>	8	8
		요양보호 기록과 업무보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요양보호 기록</li> <li>● 업무보고</li> <li>● 업무회의</li> </ul>	6	8
		신체활동 지원	● 식사와 영양 요양보호	6	7
			● 배설 요양보호	5	10
			● 개인위생과 환경 요양보호	5	10
● 체위변경과 이동 요양보호	5	7			

		● 안전과 감염 관련 영양보호	3	8	
		● 복지용구 사용	1	1	
		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	4	8	
	상황별 영양보호 기술	치매요양 보호기술	● 치매 대상자와 가족	10	3
			●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 지원 ● 치매 대상자의 문제행동 대처 ● 치매 대상자와의 의사소통	11	10
			● 인지활동 지원 및 관리	5	4
		임종 영양보호	● 임종 전 단계 ● 임종기 단계 ● 임종대상자의 지원 및 가족 영양보호	3	3
			응급상황 대처 및 감염관리	● 응급처치(골절, 질식, 경련, 화상 등) ● 심폐소생술 ● 자동심장충격기 적용 ● 감염 관리	6
	● 상황별 사례(재가, 시설, 응급)	9		6	
	소계			① 126	② 114
현장실습 (80시간)	노인요양시설 실습	통합실습 I	40		
	재가노인복지시설 실습	통합실습 II	40		
	소계		③ 80		
총 계(① + ② + ③)			320		

## 2 | 경력자 교육과정

구분	과목	교육내용	교육시간	
			이론	실기
이론강의 (126시간) / 실기연습 (57시간)	요양보호와 인권	요양보호 대상자의 이해	2	1
		노인복지와 장기요양제도	7	
		인권과 직업윤리	6	3
		요양보호사 인권보호와 자기계발	6	2
	노화와 건강증진	노화에 따른 변화와 질환	18	2
		치매, 뇌졸중 파킨슨 질환		
		노인의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		

이론강의 (126시간) / 실기연습 (57시간)	요양보호와 생활지원	의사소통과 정서지원		8	4	
		요양보호 기록과 업무보고		6	4	
		신체활동 지원	● 식사와 영양 요양보호		6	3
			● 배설 요양보호		5	5
			● 개인위생과 환경 요양보호		5	5
			● 체위변경과 이동 요양보호		5	3
			● 안전과 감염 관련 요양보호		3	4
	● 복지용구 사용		1	1		
	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		4	4		
	상황별 요양보호 기술	치매 요양보호 기술	● 치매 대상자와 가족		10	1
			●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 지원		11	5
			● 치매 대상자의 문제행동 대처			
			● 치매 대상자와의 의사소통			
		● 인지활동 지원 및 관리		5	2	
임종 및 요양보호		3	1			
응급상황 대처 및 감염관리		6	4			
상황별 사례		9	3			
소계		① 126	② 57			
현장실습 (40시간)	노인요양시설 실습		20			
	재가노인복지시설 실습		20			
	소계		③ 40			
총 계(① + ② + ③)		223				

### 3 국가자격(면허)소지자 교육과정

#### ① 간호사

구분	과목	교육내용	교육시간	
			이론	실기
이론강의 (26시간) / 실기연습 (6시간)	요양보호와 인권	노인복지와 장기요양제도	7	
		인권과 직업윤리	4	2
		요양보호사 인권보호와 자기계발	4	2
		요양보호대상자의 이해	2	
	요양보호와 생활지원	요양보호 기록과 업무보고	6	2
	상황별 요양보호기술	치매 요양보호	3	
소계			① 26	② 6
현장실습 (8시간)	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실습		③ 8	
총 계(① + ② + ③)		40		

## ② 사회복지사

구분	과목	교육내용	교육시간	
			이론	실기
이론강의 (32시간) / 실기연습 (10시간)	요양보호와 인권	노인복지와 장기요양제도	4	
		인권과 직업윤리	4	
		요양보호사 인권보호와 자기계발	4	
	노화와 건강증진	노화에 따른 변화와 질환	10	3
		노인의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		
	요양보호와 생활지원	신체활동 지원	4	3
		요양보호 기록과 업무보고	2	
	상황별 요양보호기술	치매 요양보호	3	3
위기상황 대처 및 감염관리		1	1	
소계			① 32	② 10
현장실습 (8시간)	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실습		③ 8	
총 계(① + ② + ③)			50	

## ③ 간호조무사 · 물리치료사 · 작업치료사

구분	과목	교육내용	교육시간	
			이론	실기
이론강의 (31시간) / 실기연습 (11시간)	요양보호와 인권	노인복지와 장기요양제도	7	
		인권과 직업윤리	4	2
		요양보호사 인권보호와 자기계발	4	2
		요양보호대상자의 이해	2	
	요양보호와 생활지원	의사소통과 정서지원	5	
		요양보호 기록과 업무보고	6	4
	상황별 요양보호기술	치매 요양보호	3	3
	소계			① 31
현장실습 (8시간)	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실습		③ 8	
총 계(① + ② + ③)			50	

## 4

## 교육내용별 교수요원 기준

과목	교육내용	강사요건
요양보호와 인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요양보호 대상자 이해</li> <li>• 노인복지와 장기요양제도</li> <li>• 인권과 직업윤리</li> <li>• 요양보호사의 인권보호와 자기계발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「고등교육법」 제14조제2항 및 제17조에 따른 교원 또는 겸임교원(명예교수, 시간강사 등을 포함한다)으로서 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·노인복지학과 및 간호학과에서 해당과목의 내용을 포함한 교과를 담당하는 자</li> <li>- 사회복지·노인복지 및 간호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로서 해당분야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</li> <li>-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, 「의료법」 제2조에 의한 의료인으로 해당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</li> <li>-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으로서 업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</li> </ul>
노화와 건강증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노화에 따른 변화와 질환</li> <li>• 치매, 뇌졸중, 파킨슨 질환</li> <li>• 노인의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「고등교육법」 제14조제2항 및 제17조에 따른 교원 또는 겸임교원(명예교수, 시간강사 등을 포함한다)으로서 간호학과에서 해당과목의 내용을 포함한 교과를 담당하는 자</li> <li>- 간호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로서 해당분야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</li> <li>- 「의료법」 제2조에 의한 의료인, 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로서 해당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</li> </ul>
요양보호와 생활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의사소통과 정서 지원</li> <li>• 요양보호 기록과 업무보고</li> <li>•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「고등교육법」 제14조제2항 및 제17조에 따른 교원 또는 겸임교원(명예교수, 시간강사 등을 포함한다)으로서 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·노인복지학과 및 간호학과에서 해당과목의 내용을 포함한 교과를 담당하는 자</li> <li>- 사회복지·노인복지 및 간호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로서 해당분야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</li> <li>-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으로서 업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</li> <li>-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, 「의료법」 제2조에 의한 의료인으로서 해당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</li> <li>- 「영양사에 관한 규칙」 영양사로서 해당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(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의 식사 관리, 식품·주방 위생관리에 한함)</li> </ul>
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신체활동 지원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「고등교육법」 제14조제2항 및 제17조에 따른 교원 또는 겸임교원(명예교수, 시간강사 등을 포함한다)으로서 간호학과에서 해당 과목의 내용을 포함한 교과를 담당하는 자</li> <li>- 간호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로서 해당 분야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</li> <li>- 「의료법」제2조에 의한 의료인, 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로서 해당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</li> <li>- 「영양사에 관한 규칙」 영양사로서 해당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(식사와 영양 요양보호에 한함)</li> </ul>
<p>상황별 요양보호 기술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치매 요양보호기술</li> <li>• 임종 요양 보호</li> <li>• 응급상황 대처 및 감염관리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「고등교육법」 제14조제2항 및 제17조에 따른 교원 또는 겸임교원(명예교수, 시간강사 등을 포함한다)으로서 간호학과에서 해당 과목의 내용을 포함한 교과를 담당하는 자</li> <li>- 간호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로서 해당 분야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</li> <li>- 「의료법」 제2조에 의한 의료인으로서 해당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</li> <li>- 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로서 해당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(치매 요양보호의 인지 자극 훈련에 한함)</li> </ul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상황별 사례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「고등교육법」 제14조제2항 및 제17조에 따른 교원 또는 겸임교원(명예교수, 시간강사 등을 포함한다)으로서 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·노인복지학과 및 간호학과에서 해당과목의 내용을 포함한 교과를 담당하는 자</li> <li>- 사회복지·노인복지 및 간호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로서 해당분야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</li> <li>-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으로서 업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</li> <li>-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, 「의료법」제2조에 의한 의료인으로서 해당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</li> </ul>